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하용하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939
--------	--------	-----

발의연월일 : 2013. 9. 26.

발의의원 : 하용하 의원, 김기석 의원
(등 찬성의원 8인)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범위 및 실비지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일수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허위 진술·감정 시 실비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제14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제3항 중 “당해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3.3.23>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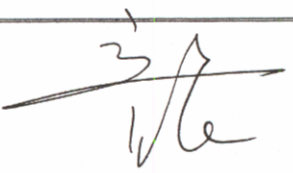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 별시 및 광 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하 용 하	하용하	
김 기 석	김기석	